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54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이용우·이학영·정혜경

박홍배 · 김태선 · 김성환

한민수 · 임미애 · 박지원

이기헌 • 최민희 • 허성무

김주영 · 정일영 · 황정아

김 윤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 대한 돌봄을 하려고 하거나"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후단 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와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 대한 돌봄을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 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 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 대한 돌봄을 하려고 하거나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 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와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 에 대한 돌봄을 위하여 사용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